

1. 개정 이유

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교육부장관이 특수목적고등학교(과학계열, 외국어·국제계열, 산업수요 맞춤형)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도록 규정 (안 제90조제3항 개정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예정

3) 행정규제 : 비대상

대통령령 제 호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0조(특수목적고등학교) ①·② (생 략) ③ 교육감이 제1항제5호, 제6호 및 제10호(공립·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)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·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후단 신설>	제90조(특수목적고등학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</u>
④ ~ ⑩ (생 략)	④ ~ ⑩ (현행과 같음)